성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적용범위(안 제2조)
-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

○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(안 제3조)
-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결정,
-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.

○ 지원기준(안 제4조)
-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,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음.

○ 중복지원 금지(안 제5조)

○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(안 제6조)
- 재난피해자는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서를 작성 신고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66조제4항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의견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7. 12. 7 ~ 12. 27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경상북도에서 통보된 시·군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, 사회재난 피해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전지원 결정 및 기준, 피해지원 신고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도내 23개 시·군 중 12개 시·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시·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형화재, 붕괴, 폭발 등 사회재난에 있어 신속한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